

2022년 예산 편성 기준표¹⁾

목		기 준	사용한도	비고
상 담 사 비 및 강 사 비 ※ 상담사 및 강사 동일 급수 적용	1급	· 대학 조교수 이상,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· 인간문화재,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·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·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· 판/검사,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· 전·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·현직4/5급 공무원 · 사회복지 기관·시설장 ·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· 기타 기아대책이 인정하는 자	· 1시간 최대 250,000원 ·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,000원	*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(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) *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, 강사의 교통비(실비)는 필요 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
	2급	·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· 전·현직 4/5급 공무원 · 중소기업체 임원급 ·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· 인간문화재·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· 통계이론,SAS,SPSS 등의 전문가 · 박사학위소지자 · 특별강사,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· 사회복지 기관·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·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· 기타 기아대책이 인정하는 자	· 1시간 최대 230,000원 · 초과 매시간당 최대 120,000원	
	3급	· 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 ·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· 외국어/전산 등 학원강사 · 체육,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· 사회복지 기관·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·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· 기타 기아대책이 인정하는 자	· 1시간 최대 170,000원 · 초과 매시간당 최대 100,000원	*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(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)
	보조	· 각종 교육 운영 및 실기실습 보조요원	· 1시간 최대 50,000원 ·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,000원	
식사비		· 1인 기준	· 15,000원	
다과비		· 1인 기준	· 7,500원	

위의 예산 편성 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임.

※ 상담사비 및 강사비

-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(주제)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지급

1) ※202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료 기준 참고